



방심은 금물! 구제역 확산 차단!



의심 증상시 신속히 신고하여
한우산업을 지켜주십시오.



전국한우협회



축산농가 소독 및 행동요령

농장내외부 소독 철저

- 농장출입 모든 차량 및 가축 소독
- 방역복/장화/장갑착용 및 농장 소독



철저한 차단방역

- 외부인 농장 방문 자제
- 농가간 모임 및 행사장 방문 금지
- 해외여행 금지
- 외국인근로자 지자체 신고 및 방역수칙 교육





구제역 증상 즉시 신고

☒ 체온상승

☒ 식욕부진

☒ 물집 및 궤양

*물집은 발굽 및 젖꼭지에도 발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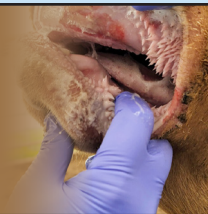
코구멍 물집
및 가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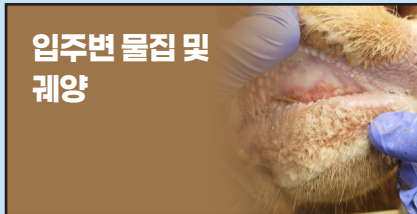
혀의 물집 및
거품 침흘림



입술 잇몸
물집 가피



입 주변 물집 및
궤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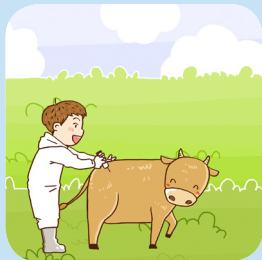




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감액 및 경감 기준

◎ 발생농장에 대한 지급기준('21.10.14 시행)

지급 기준	구제역·브루셀라병(소) 발생시		80% 지급
	① 시군별 발생농장 중 최초 신고 농장	90% 지급	
	②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농장		
	③ CCTV 확인결과 방역기준 준수 등 방역노력 인정 농장		





◎ 추가 감액기준 (밀줄친 사항은 예방살처분 농가<음성판정시>도 감액 적용)

재발생	최근 5년 이내 동일 가축전염병이 동일 농장에서 재발생 ※ 시행일('18.5.1일) 2년 이내 발생건만 재발횟수 산정시 포함		2회 발생	20% 감액
			3회 발생	50% 감액
			4회 발생	80% 감액
방역 기준	사육제한	사육제한 명령 위반시		100% 감액
	역학조사	항체가 검출된 경우		40% 감액
		항원과 항체가 동시에 나온 경우		20% 감액
	축산법 관련	축산업 미등록·미허가		30% 감액
		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 초과 시		초과사육분 감액
	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	외국인 근로자 방역교육 및 소독 조치 미이행		10% 감액
		외국인 근로자 미신고 (발생과 관련 없는 경우)		10% 감액
		외국인 근로자 미신고 (발생과 관련된 경우)		60% 감액
	해외 입국시 조치	공항만에서 입국 미신고 및 검역관의 질문·검사·소독 등 조치 거부 (발생과 관련 없는 경우)		10% 감액
공항만에서 입국 미신고 및 검역관의 질문·검사·소독 등 조치 거부 (발생과 관련 없는 경우)		60% 감액		
시설 차량	방역시설	소독설비·방역시설 미설치		20% 감액
		관리사, 축사 등 신발소독조 미설치		5% 감액
	축산차량	축산차량 미등록, GPS 미장착, 전원끄거나 훼손·제거 운전자·소유자 방역교육 미이수		20% 감액



◎ 추가 감액기준

방역활동	농장 소독 및 구충·구서 미실시		5% 감액
	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기준 미준수		5% 감액
	검사, 주사, 투약 등 명령위반		5% 감액
	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		100% 감액
의심축 신고	의심축 미신고		60% 감액
	외관상 증상이 최초 나타난 날 이후 신고한 경우		40% 감액
발생시조치	살처분 명령 이행을 지연한 경우	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	10% 감액
		48시간 이상 72시간 미만	30% 감액
		72시간 이상	60% 감액
	역학 조사 거부·방해·회피, 거짓 진술 및 고의적 사실 누락·은폐		20% 감액
	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 위반		20% 감액
	병원체 오염물건의 소각·매몰·소독 명령 위반		20% 감액
	병원체 오염물건의 이동제한 또는 세척금지 명령 위반		20% 감액



◎ 추가 감액에 대한 경감기준

(발생에 따른 20% 감액은 경감되지 않으며, 추가감액시만 경감)

외관상 증상이 나타난 날 또는 나타나기 전에 신고한 경우	10% 경감
출입기록, 전화예찰, 살처분명령 이행, 역학조사 협조, 오염물건 소각 등 지자체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경우로 지자체 추천시	10% 경감

◎ 과태료 규정

위반행위	과태료 부과금액		
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위반
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	500	750	1,000
구제역 예방접종 외의 명령 위반	200	400	1,000

*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[별표3]

※ 혈청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을 80% 미만일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살처분 보상금이 차등 지급될 수 있음. (『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고시』)



구제역 의심축 발생 시 즉시 신고!

1588-9060, 1588-4060

구제역 확산
차단을 위해
적극적인 실천을
당부드립니다!



전국한우협회